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99
----------	-----

제출연월일 : 2006년 월 일

제 출 자 : 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위한 시설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청남대운영조례→청남대관리·운영조례)
- 민원해소 및 사고예방을 위한 동절기 관람시간 단축(제6조)
-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입장료, 사용료 감면 기준(제7조, 제12조)
- 유희시설을 활용한 시설 설치·운영 기준(제11조)
- 운영수익 증대를 위한 사용료 부과기준(제12조)
- 시설 증설로 인한 위탁근거 추가(제15조)
- 청남대 등록상표(BI) 유무상 사용허가 규정(제16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제안자 의견

-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유희시설을 활용한 시설설치·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충청북도 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남대(이하'청남대'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청남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충청북도청남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청남대의 운영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청남대의 소장자료 전시에 관한 사항
3. 청남대 주요 시설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청남대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관) ①청남대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청남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제7조(입장료 징수 등) ①도지사는 관람객으로부터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표1의 입장료를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자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 1~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10.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

11. 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는 단체입장료에 준한다.

2.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단체 및 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익일까지 입장하는 때에는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한다.

④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장권)①입장권은 전산입장권 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서식은 별표2와 같다.

②입장권 대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30부터 관람 종료 1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

제9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정신질환 및 전염병환자
2.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안전관리상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②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또는 취사행위
2. 지정된 전시물 외의 전시물을 만지거나 통제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야생화 및 산나물 채취행위

제10조(요금표 등 게시) 소장은 매표소 부근에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등) ①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장
2. 각종 문화 예술공연 및 행사
3. 야외예식장(야외 웨딩촬영 포함)
4. 영화, 드라마, 광고(CF) 등 촬영
5. 각종 체험장
6.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판매시설
7. 기타 청남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1호의 사용신청서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받은 자는 별표3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2. 충청북도 및 청남대관리사업소가 후원, 협찬하는 공연 및 각종행사
3.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수탁업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등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상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받은자가 사용허가 신청한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4. 위원회의 사용허가 자문·심의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남대의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소장이 공익상 관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남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및 체험물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남대 경비
2. 청남대 관광안내
3. 청남대 조경식재 및 전문관리
4. 청남대 환경미화
5. 각종 문화·전시 행사
6.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

제16조(상표 등의 사용) ①청남대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의 신청서에 의거 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남대 홍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입 장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30인 이상)	비 고
어 른	5,000	4,000	19세 ~ 64세
청소년	4,000	3,000	13세 ~ 18세
군 경 등			하사 이하의 자와 전투 경찰순경·의무소방원
어린이	3,000	2,000	7세 ~ 12세
노 인			65세 이상

[별표2]

입장권 (회수용)	청남대 입장권	
연번 일시 합계 명 금액 원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연번 일시 합계 명 금액 원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별표3]

청남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및 사용구분		장 소	사용료	비 고
본관	내부촬영	1층 2층	1,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0시간 기준 (시간당 10만원) · 드라마, 영화, 광고(CF) 촬영
	외부촬영	본관주변	100,000/ 1시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영화, 광고(CF) 촬영 ※ 내부촬영후 외부촬영은 별도 사용료 없음
웨딩 촬영		청남대내	100,000	승용차 2대(5명 기준)
영화, 광고 (CF) 촬영 등		청남대내	500,000	골프장, 헬기장 등 청남대내 시설 및 장소
야외 결혼식장		헬기장		하객1인당 단체입장료에 준한 사용료 징수

※ 시설 사용료는 위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상호협약에 의한다.

[별지1]

공유재산(시설·상표) 사용(설치) 신청서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소장
협조 :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 여)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재산 (규 모)					
<p>위와 같이 청남대 시설·상표를 사용(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기관·단체) (인)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귀하</p>					

공유재산(시설·상표) 사용(설치) 허가증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소					
사용목적					
사용인원	(남 , 여)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재산					
<p>위와 같이 청남대 시설·상표를 사용(설치)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장(직인)</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2(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법 제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충당, 이용료의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